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2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8. 30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 9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0. 9. 29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강희천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근거규정인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개정된 지원사업범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보조사업의 범위 조정(제2조)
 급식시설설비사업,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,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
- 2) 「알기쉬운 법령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일부 표현 변경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,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판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